

부설연구소(원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1994. 5. 9.
제8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학칙 제3장 5조에 의한 부설연구소(원)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연구소의 설치는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.

1. 설립 목적
2. 규정(안)
3.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
4. 설립 후 2년간의 재정계획서
5. 연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개요서(조 신설 2015.8.4)

제2조의 2(통·폐합) 부설연구소(원)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,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소(원)의 해산을 명하거나 통·폐합을 명할 수 있다.(조 신설 2015.8.4)

1. 부설연구소(원) 조사 및 평가 결과 해당 부설연구소(원)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
3. 규정에 따른 운영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연구소 운영의 전략적 효율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(개정 2006.12.4)
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-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 - 15명으로 한다. (개정 2006.12.4)
-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간사)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원 등)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(조 개정 2006.12.4)

제6조의 2(연구보조원) 연구원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이 임면한다.

(조 신설 2006.12.4)

제7조(연구소 평가) ① 학술심의위원회는 1년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별로 연구 활동비를 차등을 두어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보고) 연구소장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운영보고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정산서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(교외연구비 정산서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)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1.6.21)

2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및 예산집행계획서(별지 제 3호 서식)를 예산배정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.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업적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

제9조(재정) ① 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각 연구소의 경비는 교외연구비와 수탁연구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내연구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연구비 관리는 연구비관리 규정에 의한다.

제10조(행정지원) 각 연구소의 제반 업무 지원은 **교무·연구팀**에서 한다. (개정 2001.6.21., 2014.3.13., 2019.06.25)

제11조(연구소 논문 투고자격) 연구소 논문집 투고는 단독논문의 경우 본교 전임교원의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각 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한 타 대학 교원의 투고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 심의 후 투고를 결정할 수 있고, 공동 논문은 본교의 전임교원과 본교의 대학원 재학생 또는 본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인사와 공동으로 투고 할 수 있다.

제12조(한시적 운영을 위한 연구소 설치) ① 기존 연구소 단위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 및 외부연구(사업)비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한시적 운영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 1항의 연구소는 그 명칭을 연구소, 사업단 및 기획단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③ 한시적 운영을 위한 연구소는 교내 연구비 및 별도의 공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(조 신설 2014.3.13)

제13조(지침 등)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연구소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(조 신설 2006.12.4) (조 변경 2014.3.13)

부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43, 2006.12.4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98, 2014.3.13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58, 2015.8.4)

이 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2호 서식)

년도 사업 계획서

연구소 명 :

연 번	사 업 명	사 업 기 간	사 업 내 용	비 고

년 월 일

연구소장 (인)

